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208
----------	------

2017년 11월 21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7년 10월 31일, 김동율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77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17년 11월 21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동율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 및 관련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(1) 조 제목을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일치시킴.(안 제6조)
- (2) 공중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대상을 명확히 함. (안 제6조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77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(1)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(2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(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(5) 비용추계 등의 자료 : 비대상 사유서 별첨

4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이하 ‘시행령’)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

[표] 주요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 (건설공사의 분할발주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.</p> <p>1.~2.(생략)</p> <p>3.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 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·안전·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<u>공사로서</u>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《신설》</p>	<p>제6조 (건설공사의 분할계약) ① -----</p> <p>----- 계약할 수 -----.</p> <p>1.~2.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----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-----</p> <p>가.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</p> <p>나.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,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</p>

- 안 제6조의 조 제목을 “건설공사의 분할발주”에서 “건설공사의 분할계약”으로 변경하고, 이에 따라 본문 중 “발주”를 “계약”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, 이는 인용조항인 시행령 제77조 “공사의 분할계약 금지”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통일시키려는 것이며,
- 안 제6조제1항제3호는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공사를 시행령 제77조제1항제3호와 부합하게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8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10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목 “건설공사의 분할발주”를 “건설공사의 분할계약”으로 하고, 본문 내용 중 “발주할 수”를 “계약할 수”로 한다.

제6조제3호의 본문 내용 중 “공사로서”를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”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

나.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,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 (건설공사의 분할발주) ① 시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 다.</p> <p>1.~2.(생략)</p> <p>3.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·안전·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 라고 인정되는 공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《신설》</p>	<p>제6조 (건설공사의 분할계약) ① --- ----- ----- 계약할 수 --- --.</p> <p>1.~2.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로서 ----- -----</p> <p>가.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.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 로 시공의 목적물,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</p>